



[시행 2021. 7. 1] [행정안전부령 제260호, 2021. 6. 10, 일부개정]

행정안전부 (사회조직과) 044-205-2369

- 1 () 이 규칙은 「시·도자치경찰위원회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2 () 「시·도자치경찰위원회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2조제2항에 따른 시·도자치경찰위원회(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회는 제외한다. 이하 같다)의 사무기구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시·도자치경찰위원회별 정원과 계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.
- 3 () ① 영 제2조에 따른 시·도자치경찰위원회 사무기구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은 해당 특별시·광역시·도 및 특별자치도의 치안수요 및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배정한다.
② 경찰청장은 시·도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기구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 제8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정원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 정원 조정과 관련하여 미리 시·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③ 제2항 후단에 따라 시·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견을 듣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은 경찰청장이 정한다.

<제260호, 2021. 6. 10.>

이 규칙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